

제 1885 호
1987. 12. 2

발행인: 서울특별시청 윤 보 현 순
 편집인: 장 영 김 성
 전 화: 37-5111-3
 인 처: 서울특별시 통합빌딩실
 전 화: 36-3337

시 보

차 례

◎ 공표사항

물품관리청원소요조례 3

◎ 조 례

제 2223 호 : 서울특별시민보건의수가조령개정조례 9

제 2224 호 : 서울특별시급수조령개정조례 9

제 2225 호 :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령개정조례 10

제 2226 호 : 서울특별시피동풍재해피난하여대책위독하는부동산등에대항동
 무석피복면적의결한조례 10

제 2227 호 : 서울특별시공공용지세권입원사권제한조치에대응과상속공급
 과세에관한조령개정조례 11

제 2228 호 :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령개정조례 11

(이런계속)

일																					
월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관공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850 호 :	도시계획사업 (유동업무실적) 시행허가	12
	제 86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13
◎	구	고	시
	관악구제 9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유치원) 시행허가변경	14
◎	공	고	
	제 740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시범공함	15
	제 741 호 :	도시공원시설위탁관리허가	17
◎	사	형	

“뚝모아 라나로, 합모아 새제로”

서 울 특 별 시

회계 01753-1405

(731-6251)

1987. 12. 2.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물품관리전환소요조치

1. 산업기지 개발공사 자재 0171-11130 ('87.11.27) 에 관련임.

2. 산업기지 개발공사소관 일반물품을 유상관리전환 소요조치 한다

희망기관은 관리전환 요청을 '87.12.7. 한 회계과에 제출할것.

첨 부 : 관리전환 소요조치 명세서 1 부, 공.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시산하전기관

관리전환 소요조항 명세서

입원 번호	심부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단 가	상 대	관 공 소 재 기	비 고
1	4710-052	도복장상판	1,800 × 16 × 6	본	2	4,530,650	신 품	물산건설관리사무소	
2	"	"	1,650 × 14 × 6	"	1	1,879,990	"	"	
3	"	"	1,200 × 11.1 × 6	"	2	2,375,405	"	"	
4	"	"	700 × 6 × 6	"	1	508,624	"	"	
5	"	"	500 × 6	"	2	455,520	"	"	
6	4810-013	계수변(B,F,V)	수동식 350 %	개	1	275,983	"	"	
7	"	"	수동식 250 %	"	1	292,386	"	"	
8	4820-043	세수변 (S.V)	400 %	"	3	1,546,100	"	"	
9	4820-025	공기변 (상구)	250 %	"	3	2,255,210	"	"	
10	"	"	75 %	"	3	202,558	"	"	
11	"	공기변 (공)	250 %	"	11	622,844	"	"	
12	"	"	150 %	"	10	341,785	"	"	
13	4710-052	단 판	800 × 11.1 × 1.5	"	4	663,080	"	"	
14	"	갑 플	200 × 1.4 × 0.3	"	1	145,750	"	"	
15	"	"	1,500 × 1.2 × 0.3	"	3	319,110	"	"	
16	"	"	1,300 × 1.3 × 0.3	"	1	79,420	"	"	
17	4730-028	락타일이음관	600 %	"	2	210,640	"	"	
18	"	"	400 %	"	3	152,340	"	"	
19	4710-052	M교두링	1,000 %	"	5	35,560	"	"	

20-4 제335호 1987.12.2

입력 번호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상태	물품소재지	비고
20	4710-052	M고무링	600 %	개	4	12,972	신품	울진건설관리사무소	
21	4710-105	KP 볼트너트	1,000 %	조	5	75,565	"	"	
22	"	"	600 %	"	4	29,640	"	"	
23	4730-028	압판	KP 1,000	개	1	39,191	"	"	
24	4710-052	단판	1,200 × 11 × 0.7	본	1	16,500	중고품	"	
25	"	"	1,200 × 11 × 0.6	"	1	14,000	"	"	
26	"	"	800 × 7 × 2.5	"	1	25,500	"	"	
27	"	"	800 × 7 × 1.5	"	1	15,000	"	"	
28	4710-052	도록장갑판	700 × 6 m	본	2	108,000	신품	"	
29	4810-013	제수번(S.V)	300 %	개	1	19,500	중고품	"	
30	4710-052	장판	1,200 × 14 × 6	본	1	186,000	"	"	
		소계			83	17,536,917			
31	4710-052	SP 1 약단판	700 % × 1.5m	개	1	217,690	신품	청원건설관리사무소	
32	4710-101	KP 압물	250 %	"	5	45,270	"	"	
33	4730-028	타타일이음판	200 %	"	1	17,949	"	"	
34	"	"	250 %	"	1	24,928	"	"	
35	4730-103	SP 꼭관	600 % × 45	"	1	140,690	"	"	
36	"	"	800 % × 45	"	1	255,200	"	"	
37	"	"	1,350 % × 45	"	1	585,200	"	"	
38	4730-205	KP 회수원꼭관	700 % × 45	"	1	305,531	"	"	
39	"	"	900 % × 45	"	1	537,501	"	"	
40	4810-010	제수번(S.V)	700 %	"	1	1,876,213	"	"	

1385 쪽

11

1386 쪽

1987.12.2

20-5

연월호	정부발행 번호	종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	장 태	발행소 개 시	비 고
41	4810-013	리수번(B,F,V)	200%	개	1	370,125	원 쪽	청원작성과사무소	
42	"	제 수 번	300%	"	9	2,092,113	"	"	
43	"	"	350%	"	1	275,983	"	"	
44	"	"	600%	"	1	784,531	"	"	
		소 계			28	7,528,824			
45	4710-105	KP 직권	800% × 6	본	1	295,641	"	수도권용구과사무소	
46	"	타이산회주형	150% × 5	"	1	51,303	"	"	
47	"	"	100% × 5	"	2	62,812	"	"	
48	"	"	80% × 4	"	2	46,320	"	"	
49	"	KP 압 분	800%	개	9	91,056	"	"	
50	"	"	500%	"	2	27,028	"	"	
51	"	KP 볼트너트	800%	조	2	46,798	"	"	
52	"	"	500%	"	2	12,704	"	"	
53	4710-105	"	200%	"	1	2,860	"	"	
54	"	KP 고무 링	500%	개	2	5,918	"	"	
55	"	"	200%	"	5	5,595	"	"	
56	"	KP 1약 나팔꼭자	250% × 90	"	1	28,408	"	"	
57	4730-012	SP 1수 공기변용관	1,500% × 150%	"	1	662,081	"	"	
58	"	SP 1수2약공기변용관	290 × 700 × 250	"	1	194,290	"	"	
59	"	SP 3 약T형관	2,000 × 70 × 350	"	1	292,500	"	"	
60	"	"	2,900 × 1,100 × 350	"	1	293,600	"	"	
61	4730-028	KP 이음 관	1,000%	"	1	294,924	"	"	

20-5
제 1385 호
시
1987.12.2

일련 번호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	종 명	규 격	단 위	수량	금 액	상 태	물 품 소 재 지	비 고
62	4730-028	KP 이음관	500 %	개	3	222,849	신 품	수도권용수관리사무소	
63	"	"	300 %	"	3	95,916	"	"	
64	4730-103	프렌지 직관	200 % × 5 m	본	1	105,082	"	"	
65	"	양프렌지 직관	200 % × 5 m	"	9	1,047,150	"	"	
66	"	프렌지 단관	250 % × 1.0 m	개	2	52,706	"	"	
67	"	"	200 % × 3.85 m	"	2	163,762	"	"	
68	"	"	200 % × 1.4 m	"	2	64,424	"	"	
69	"	"	200 % × 0.75 m	"	2	53,646	"	"	
70	"	"	100 % × " "	"	1	15,097	"	"	
71	"	"	80 % × 0.4 m	"	1	4,044	"	"	
72	"	SP 2 약관	250 % × 0.2 m	"	1	30,000	"	"	
73	"	SP 1 약관	100 % × 90	"	1	7,223	"	"	
74	4730-200	KP 소켓 단관	1,000 % × 1.5 m	"	2	1,113,386	"	"	
75	"	"	500 % × 1.5 m	"	3	530,364	"	"	
76	"	"	300 % × 1.5 m	"	3	348,256	"	"	
77	"	"	200 % × 1.5 m	"	5	261,160	"	"	
78	"	"	150 % × 1.5	"	5	190,830	"	"	
79	4730-203	KP 소켓 직관	(B) 100 % × 45	"	1	563,270	"	"	
80	"	"	(B) 300 % × 45	"	3	141,054	"	"	
81	"	"	(B) 200 % × 45	"	2	48,200	"	"	
82	"	"	(B) 300 % × 22½	"	3	114,372	"	"	
	소 계				34	9,494,299			
83	4710-052	강관 직관	500 % × 5 m		1	301,120	"	포항용수관리사무소	

계 1985.2

4

계

1987.12.2

20-7

입력 번호	장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금 액	상태	물품소재지	비 고
84	4710-052	담 판	1,000 % × 1.5	본	1	232,420	신품	포항용수관리사무소	
85	"	"	1,350 % × 1.5	"	1	377,410	"	"	
86	5730-028	집 물	1,350 % × 0.5	개	3	238,260	"	"	
		소 계			6	1,149,220			
87	4710-105	무수단판	200 % × 3.20m	개	1	38,500	"	반월건설관리사무소	
88	"	IF담판	500 % × 1.0m	"	1	150,162	"	"	
89	"	소켓담판	250 % × 1.3m	"	1	44,802	"	"	
90	4730-009	집	80 %	"	2	6,893	"	"	
91	"	"	150 %	"	1	7,503	"	"	
92	"	"	300 %	"	1	26,976	"	"	
93	"	"	500 %	"	1	55,845	"	"	
94	"	"	600 %	"	1	69,680	"	"	
95	4730-203	KP 곡관 B	150 % × 22	"	2	17,696	"	"	
96	"	"	600 % × 90	"	4	948,431	"	"	
97	"	KP 곡관 A	800 % × 45	"	6	1,919,478	"	"	
98	4730-205	F 곡관 B	150 % × 90	"	1	20,408	"	"	
99	"	F 곡관 A	150 % × 45	"	6	104,280	"	"	
100	4730-209	소켓 FB	150 % × 80	"	1	14,536	"	"	
101	4730-219	F 편타관 A	150 % × 80	"	1	14,064	"	"	
102	"	"	200 % × 80	"	9	146,493	"	"	
103	"	소켓편타관 B	400 % × 250	"	1	58,784	"	"	
		소 계			40	3,644,532			
		합 계			241	39,353,892			

20-9
계 1385 호 시

1987.12.2

조 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립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 조제를 이에
공포한다.

1987. 12. 2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223 호

서울특별시립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보건소 수가 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개인 재활용) ① 피입력 및
기구보급수수료는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 보조하는등 가족
계획사업 추진에 재활용되도록 하
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급수조례중 개정조제를 이에 공
포한다.

1987.12. 2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224 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24 조를 삭제한다.

제 26 조 제 1 항중 "급수사용료, 급수
관손료 및 가압료 (이하 "수도요금"
이라 한다)"를 "급수사용료와 급
수관손료(이하 "수도요금"이라 한
다)"로 한다.

제 41 조 제 7 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7. 제 22 조 내지 제 25 조의 급수
사용료, 급수관손료의 징수 및 급
수 사용량의 제량 조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7년 11월 남기인
가압료와 이 조례 시행전에 책납
된 가압료는 중건회 규정에 의거
징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어린이 및 청소년강조례중개정
조제를 이에 공포한다.

1987.12. 2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제 2225 호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조례중 개정 조 제

서울특별시 어린이 및 청소년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어린이상과 청소년상은 각각 나라 사랑부문, 효행부문, 예술부문, 체육부문, 체육부문 및 과학기술부문으로 구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태풍동 조례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등의 동거·등록에 대한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이에 공포한다.

1987. 12. 2

서울특별시장 열 보 전

◎ 서울특별시조례제 2226 호

서울특별시태풍동채권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채권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동 채권으로 인하여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동거·등록에 대한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세면제) 장마, 호우, 태풍등 재해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건축물과 선박의 대체 취득으로 인하여 지방채권 제 108 조 또는 동 법제 1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동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면제사무 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면제신청등) 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에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 서울특별시 조례 제 2227 호

서울특별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재산세 납기계시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가족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 서울특별시 조례 제 2228 호

서울특별시 가족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가족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오물청소법 제 22 조 제 1 항"을 "폐기물관리법 제 35 조 제 1 항"으로 하고, "도시생활 환경을 정결히 하여"를 "생활환경의 보전 및"으로 한다.

제 2 조 중 "시장이 규칙으로"를 "규칙으로 한다.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 중 "학교, 공공기관"을 "국가, 공공단체, 학교"로 "시험"을 "실험"으로 하고, 동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도 예시장·공판장, 축산물 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유장

제4조 제1항 본문중 “사육장을 관찰하는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구청장이 제1항의 서류”를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로 한다.

1. 축사의 시설명도 1부.

제5조중 “가축사육허가물 받은 자”를 제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사육허가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이하 “가축사육자”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허가사항”을 “가축사육”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표1의 지역과 가축을 사육토록 허용된 사육장이라도”를 “가축사육지에 의한 가축사육이”로 “오물정소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처리한다”를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로 한다.

제7조중 “제3조 제2항 및 제6조”를 “제3조 제2항, 제4조 및 제6조”로 한다.

[별표1]중 구로구란의 일부 허용란중 “합동”을 “합동, 공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란중 “1. 사육자의 주민등록표1부”를 “1. 축사의 시설명도1부”로 한다.

부 칙

이 조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850 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 640 호 (83.11.25)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되고 서울특별시공고제 555 호 (85.9.20)로 도시계획사업 완료된 도봉구 월계동 128번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주가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판매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이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낸다.

1987. 12. 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도봉구월계동 128번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

(유용업무설비)

명칭: 동양시멘트㈜ 시멘트

출하장 시설개선

다. 사업의 규모: 대 지 면 적 7,149 ㎡

기존시설연면적 2,436 ㎡

금회시설면적 42 ㎡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중로구도림동60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혁 재 원

마. 사업기간: 87.11.28 ~ 88.3.31

㉠ 서울특별시고시제 86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1. 서울특별시 고시제 633 호 (86.8.29) 로
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된 도봉구 방학
동 294-2 의 35 필지상의 농협직장 조
합주택의 단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불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고시한다.

1987. 12. 2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내역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	전	소	로	3	6	110	방학동 295-1	방학동 183-33	
변	경	소	로	3	6	15	"	방학동 294-23	일부구간폐지

구 고 시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97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유치원)시행허가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72 호 ('85.11.13)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유치원)변경 시행허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67-32, 34번지 성북유치원 및 성덕고등기술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 및 서울시조례 2126 호의 행정권한 위임조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유치원) 시행허가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12. 2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관악구 봉천동 산 67-32, 34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학

교, 유치원)

명칭: 성북유치원, 성덕고등기술 학교

다. 사업시행규모

대지면적: 2,902 m

건축면적: 812.88 m

연 면 적: 3,746.88 m

(지하 1층, 지상 3~4층)

라. 사업시행자

(당초)

관악구 신림동 90-92 번지

성심복지재단이사장 박행남

동작구 노량진동 232-192 번지

성북학원이사장 조중호

(변경)

관악구 신림동 90-92 번지

성심복지재단 및 성북학원이사장

박 행 남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1985.12.4

○ 준공예정일

(당초) 1987.10.30

(변경) 1988.10.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소유

권이의의 권리명세: 별첨(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740 호

도시계획사업 시행(도로)공람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07 호('73.12.24)로 시설결정하고 석고 제 207 호('73.12.24)로 지적승인된 미림여중고교앞 2개소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의 규정액의 저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한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12. 2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실험동 300-5 ~ 803-274
300-8 ~ 302-2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미림여중고교앞 2개소 도로개설공사) 시행

다) 사업규모: B = 6 ~ 7 m
L = 200 m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장
(관악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인가로부터 180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목 및 소유권 권리명세: 아래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아래

아)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기타사항: 의견 및 삭제한 사항은 상기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면적상	이용상	소유자주소명	소유권의	비고
							관제인주소명	권리명세	
1	관악구실험동 302-22	도	8㎡				관악구실험동 302-10 김상용		
2	관악구실험동 302-23	도	52㎡				관악구실험동 302-14 이창환 용산구동자동 19-8 A동 205호 오윤환	근저당권 설정	채무사(이 기성)자
3	관악구실험동 301-13	도	165㎡				중구중학동 83-5 김성필		
4	관악구실험동 299-25	도	171㎡				관악구실험동 301-2 박일립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실제이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 자 주소 성 명 관 계 인 주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비 고
5	관악구신림동 299-28	도	23㎡				관악구신림동 351 윤병호		
6	관악구신림동 299-26	도	71㎡				관악구신림동 299-24 손병익 근저당권 중구장충동 2가 162-1 실 정 규 대일유업주식회사	채무자 (신관 동구용운동 153번지)	
7	관악구신림동 300-2	도	79㎡				관악구신림동 300-1 김영배 관악구신림동 390-1 신림 6 동 새마을금고	채무자 (현명주) 처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실 재 이용상황	소유 자 주소 성 명	소유권이외
						관 계 자 주소 성 명	의 권리명세
1	관악구신림동 302-22	건물	기와, 브릭 (5.6 평)	1 동 (일부지속)		관악구신림동 302-10김상용	
2	관악구신림동 302-23	건물	기와, 벽돌 (13.8 평)	1 동 (일부지속)		관악구신림동 302-14이창환	
3	관악구신림동 808	건물	기와, 브릭 (10 평)	1 동 (전부지속)		관악구신림동 808-492이병호	
4	관악구신림동 808-274	건물	기와, 브릭	1 동 (일부지속)		관악구신림동 808-259문판관	
5	관악구신림동 299-25	담장	브릭조 H= 1.8 m L= 36.0 m	1 식		관악구신림동 301-2 박일립	
		화장실	스라브, 벽돌 (1.0 m × 1.0 m)	1 동			
		연탄판	선라이트, 브릭 (2.0 m × 2.5 m)	1 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주소 성명	소유권이의
						관계인 주소 성명	의관명세
6	관악구신림동 299-26	대문 담장	벽돌조 H=1.8m L=15.0m	1 식 1 식		관악구신림동 299-24 손병익	
		화장실	스라브, 벽돌 (1.0m×2.5m)	1 동			
		연탄장	스펙트, 보력 (2.0m×2.5m)	1 동			
7	관악구신림동 300-2	대문 담장	벽돌조 H=1.7m L=12.0m	1 식 1 식		관악구신림동 300-1 김영배	

◎서울특별시공고제 741 호

도시공원시설위탁관리허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10 관
악산 자연공원내 기부채납 시설물(매
정)의 재감정평가 결과 무상사용기간
이 연장됨에 따라 매정의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였기 도시공원법 제 6 조
제 2 항에 의거 허가하고 같은법 제 6
조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

고한다.

1987.12. 2

서울특별시장

가.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10 관악산 자연공원
나. 위탁관리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
현동 663-13 실영택
다. 위탁사항: 마정1동(면적 255.23㎡, 건물 150㎡)
라. 위탁관리기간: 1986.10.21-1999.
9.20 (12년 11월)

사 령

◎ 1987년 12월 1일

령 제 366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일호	강동구보건소과전 (87.12.1-88.5.31)	동부병원	지방보건기사보
정훈	동부병원 과전 (")	강동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

령 제 367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박재용	의약과 파전 (87.12.1-87.12.15)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지방행정주사
김성규	"	회계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태파	"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지방행정서기
백명호	"	용산구	지방행정서기보
이성운	"	동부병원	지방별정직7급상당
이은주	"	총무과	지방타가원

령 제 369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영배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한강관리사업소	지방별정직3급상당

령 제 370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사무관 한봉우
 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면함.

87.11.30

서울특별시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근무물 명함.	정 호 성 87.11.30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가스과 안전관리계장에 보함.	권 총 수 87.11.30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물 명함.	이 용 신 87.11.30
서울특별시 내무국 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전자제산소 전산1계장에 보함.	심 오 택 87.11.30
서울특별시 내무국 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한강관리사무소 근무물 명함.	이 종 필 87.11.30

대 등 령
서울특별시 장

© 1987년 12월 2일

령 제 371 호

상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황석문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에 의거 결핵에 처함.	강 남 구	지방토목기과
이영식	"	"	지방토목기사보
고재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3 호에 의거 결핵에 처함.	새종문화회관	지방기계장 (기능직 6등급)

20-201-1985호

1987.12.3

성명	출생년월일	학력	직급
이장호	1945.08.15	서울대학교	지방권역기과
김이환			지방전속기과
이종근			지방전속기과
김강성			
김문성			지방전속기과

◎ 1987년 12월 3일

병 제 372 호

성명	발령사유	직급
이복준	원제 의하여 그직을 겸함.	지방행정직 5급 상당

수출특별시장

